

2020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I .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예 산 현 액 : 0원
- 징수결정액 : 4,510천원
- 실제수납액 : 2,150천원
- 결손처분액 : 0원
- 미 수 납 액 : 2,360천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47.6%(전년도 20.0%)임.

〈2020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손처분액 (D)		미수납액 (E) = (A)-(C)-(D)	예산 수납률 (C/A)	징수율 (C/B)
				불납	시효			
합 계	—	4,510	2,150	—	—	2,360	—	47.6
세외수입	—	4,510	2,150	—	—	2,360	—	47.6
임시적세외수입	—	950	950	—	—	—	—	100.0
기타수입	—	950	950	—	—	—	—	100.0
그외수입	—	950	950	—	—	—	—	100.0
지난년도수입	—	3,560	1,200	—	—	2,360	—	33.7
자녀년도수입	—	3,560	1,200	—	—	2,360	—	33.7

※ 결손처분액 = 불납결손액 + 시효결손액, 미수납액은 다음연도 이월액

2. 세출결산

- 예산액 : 1,540,785천원
- 예산증감 : 0원
- 예산현액 : 1,540,785천원
- 지출액 : 1,172,442천원
- 이월액 : 0원
- 불용액 : 368,343천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23.9%(전년도 16.3%)가 발생
- 불용사유별 금액으로는 낙찰차액 12,704천원, 예산집행잔액 355,638천원임.

< 2020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
총 예산	1,540,785	1,172,442	-	368,343	23.9
사업예산계	1,400,399	1,074,980	-	325,419	23.2
민생사법경찰 활동 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1,400,399	1,074,980	-	325,419	23.2
민생사법경찰 업무 활성화	1,400,399	1,074,980	-	325,419	23.2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강화	46,805	26,926	-	19,879	42.5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1,165,323	872,397	-	292,926	25.1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188,271	175,657	-	12,614	6.7
일반예산계	140,386	97,462	-	42,924	30.6
기본경비	140,386	97,462	-	42,924	30.6

- 가.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 나. 예산 전용 : 해당 없음.
- 다. 예산 이체 : 해당 없음.
- 라. 예산의 변경사용 : 해당 없음.
- 마. 예비비 사용 : 해당 없음.
-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 없음.
- 사. 국고보조금 집행 : 해당 없음.

3. 기금결산 : 해당 없음.

4. 채권현재액 : 해당 없음.

5. 채무결산 : 해당 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해당 없음.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2020년도말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 신규취득 등 14,687천원
- 매각·폐기 등 29,269천원
- 당해연도말 총 수량 141개, 현재액은 113,254천원임.

〈 2020회계연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

(단위:수량-개, 금액-천원)

연번	정부 물품 분류 번호	품명	단 위	정 수	내 용 연 수	구 분	2019 년 도 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물품 증감현황								2020 년 도 말 보 유 액
								취득				처분				
								구 매	관 리 전 환	양 여	소 계	매 각	관 리 전 환	양 여	소 계	
합계				141		수량	124	20	-	-	20	-	3	-	3	141
						금액	127,836	14,687	-	-	14,687	-	29,269	-	29,269	113,254
1	2510 1611	화물트럭	대	1	8	수량	2	-	-	-	-	-	1	-	1	1
						금액	54,372	-	-	-	-	-	27,186	-	27,186	27,186
2	4010 1787	병난방기	대	13	9	수량	13	-	-	-	-	-	-	-	-	13
						금액	7,721	-	-	-	-	-	-	-	-	7,721
3	4321 1503	노트북 컴퓨터	대	9	6	수량	1	8	-	-	8	-	-	-	-	9
						금액	1,529	11,327	-	-	11,327	-	-	-	-	12,856
4	4511 1616	비디오 프로젝터	대	1	8	수량	2	-	-	-	-	-	1	-	1	1
						금액	2,794	-	-	-	-	-	1,379	-	1,379	1,415
5	4512 1516	디지털캠 코더또는 비디오 카메라	대	117	9	수량	106	12	-	-	12	-	1	-	1	117
						금액	61,420	3,360	-	-	3,360	-	704	-	704	64,076

Ⅱ . 검토의견

1. 세입결산

- 2020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세입은 당초 편성한 예산은 없으나 직원 전출입 등에 따른 수당 조정과 연가보상비 등의 반납에 따른 ‘그외수입’ 95만원과 ‘지난연도 수입’ 356만원을 징수결정하고, 215만원을 수납하여 47.6%의 징수율(미수납액 236만원)을 보이고 있음.

〈 2020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결손처분액 (D)		미수납액 (E)= (A)-(C)-(D)	예산 수납률 (C/A)	징수율 (C/B)
				불납	시효			
합 계	-	4,510	2,150	-	-	2,360	-	47.6
세외수입	-	4,510	2,150	-	-	2,360	-	47.6
임시적세외수입	-	950	950	-	-	-	-	100.0
기타수입	-	950	950	-	-	-	-	100.0
그외수입	-	950	950	-	-	-	-	100.0
지난년도수입	-	3,560	1,200	-	-	2,360	-	33.7
지난년도수입	-	3,560	1,200	-	-	2,360	-	33.7

- 2020회계연도에 발생한 수당반납 세외수입(451만원)은 2019회계연도 예산지급분으로 다음연도인 2020년 세외수입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임.1)

1)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지방세외수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1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을 말한다.

2. 임시적 세외수입

가. 재산매각수입

나. 부담금

다. 과징금 등

라. 기타수입

마. 지난연도수입

〈 최근 3년간 민생사법경찰단의 그외수입 세부내역 〉

(단위 : 원)

연 도	예산과목	예산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과부족액	과부족 상세사유
2020	224-06 그외수입	0	950,420	950,420	0	직원 전출입 등에 따른 수당 조정 또는 수당 과오지급, 수령시 발생 연가보상비와 시전입에 따른 파견 직급보조비 반납
2019	224-06 그외수입	0	4,451,290	891,290	3,560,000	수당 반납분에 따른 직원 자금압박으로 체납. 20년도 38세금징수과 체납 이관 및 분납조정에 따른 일부 수납
2018	224-06 그외수입	0	40,000	40,000	0	2017년 11월, 12월 수당 반납 (시부사망에 따른 가족수당 반납)

〈 2020년 수당 반납 세부내역 〉

(단위 : 원)

예산과목	과세내역	건 수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비고
총 계			4,510,420	2,154,420	2,360,000	
224-06 그외수입	2019년 연가보상비 정산 반납	1	305,270	305,270	-	
	시 전입에 따른 직급보조비(6급이하 파견 일할계산 반납)	2	645,150	645,150	-	
225-01 지난연도 수입	가족수당 반납 (가족사항 변경)	1	3,560,000	1,200,000	2,360,000	38세금 징수과 이관 체납 관리 및 분할납부독려 ('21. 1월, 3월 일부 추가 수납)

- 또한, 민생사법경찰단의 징수결정액(451만원) 대비 수납률은 47.6%(215만원) 수준이며, 미수납액은 236만원(가족수당 반납)으로 징수결정액(451만원) 대비 미수납률이 52.4%에 달하고 있음.

○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를 살펴보면, ‘지난연도 수입’²⁾ 356만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나 수납액은 120만원으로 236만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에 따른 것임.

〈 2020년 민생사법경찰단의 지난연도 수입 세부내역 〉

(단위 : 원)

연 도	예산과목	예산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미수납액	과세 세부내역
2020	225-01 지난년도 수입	0	3,560,000	1,200,000	2,360,000	착오지급 수당(가족수당 등) 반납 38세금 징수와 이관 체납관리 및 분할납부독려('21.1월, 3월 일부 추가 수납)

〈 최근 3년간 민생사법경찰단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현황 〉

(단위: 원, %)

연 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수납률
2020	0	4,510,420	2,150,420	2,360,000	47.6%
2019	0	4,451,290	891,290	3,560,000	20%
2018	0	40,000	40,000	0	100%

○ 「2020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는 ‘지난연도 수입’ 등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누락 없이 세입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에도,³⁾

2) ‘지난연도수입’은 당해연도 이전에 징수결정된 수입금을 당해연도에 징수하였을 경우 「지방회계법」 제27조에 따라 발생하는 세입예산 과목임.

「지방회계법」 제27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①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제7조에 따른 출납 폐쇄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세출의 해당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서울특별시, 「2020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2019. 7., 27면(1. 세입예산 편성방향) 참조.

○ 각 부서별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누락 없이 세입예산 편성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비반환금 수입, 공금통장 이자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 민생사법경찰단은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 결과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지난연도수입’ 과목을 2020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있는바, 민생사법경찰단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미수납액 발생 시 ‘지난연도수입’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미수납액 관리와 지속적인 징수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지난연도수입’의 미수납액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으로 착오 지급할 경우 상당기간 잘못 지급될 개연성이 높은 만큼 집행 후 다시 반납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점검에 의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적정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민생사법경찰단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특히, 민생사법경찰단은 사법경찰로서 행정의 실효성 강화 및 법질서 확립 제고에 기여하는 부서로서 높은 법질서 의식이 요구되므로, 향후에는 규정에 맞지 않는 수당 등의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당지급 관리와 부당하게 수령한 수당의 반납 등 수당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세출결산

가. 사무관리비의 높은 불용률 등

- 2020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의 사업별 사무관리비 총액은 6억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81.7%를 집행(1억 1천만원, 불용률 18.3%)하였으며, 세부 내역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특사경 직무 공동연수(1천 5백만원)’, ‘국외통역료 등(160만원)’, ‘정책자문단 운영(1천만원)’은 전액 불용처리 하였으며,
 - 특히, ‘국외통역료 등(160만원)’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서에서 ‘국외업무여비(1천 5백만원)’가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에 따른 공무출장 등이 제한됨에 따라 전액을 감액함에 따라 ‘국외통역료 등’도 전액 불용이 예상되므로 함께 감액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으나 감액하지 않은바, 결국 전액 불용처리 되었음.
 - 또한, 민생사법경찰단은 2020년 정책자문단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책자문단 미구성으로 전액 불용처리 하였음.
 - ‘강사료(22.8%)’, ‘원고료(20%)’, ‘기본직무교육 교육생 중식비(46%)’, ‘기획단속 등 매식비(27.4%)’, ‘압수물 폐기 운영(86.3%)’, ‘체력단련실 운영(21.4%)’, ‘주요업무추진 급량비(39.2%)’ 등은 불용률이 20%를 초과하고 있음.
- ‘사무관리비’의 불용사유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불용으로 워크숍 실시 불가능, 외부 출장 감소 등은 코로나19 확산과 집합금지 확대 등으로 집행 불가능이 예견되었음에도, 집행이 어려운 ‘사무관리비’에 대한 감추경을 시행하지 않음에 따라 ‘사무관리비’ 1억 1천만원(불용률 18.3%)을 불용시켰음.
- 2020회계연도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유례가 없는 제4회 걸친 추경을 통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차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예산을 불용처리함으로써 소중한 재원을 사장(死藏)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재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건전 재정 운영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임.

○ 또한, ‘기본사무용품이류’는 120만원 편성하였으나 170만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장비수리비’는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70만원, ‘도서구입비’는 4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73만원을 집행하는 등 ‘사무관리비’ 예산을 의회가 의결한 대로 집행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집행하였음.

- ‘사무관리비’가 비교적 탄력적으로 사용가능한 예산이라고는 하나, 예산의 탄력적 사용의 한계는 명확히 존재하므로 민생사법경찰단은 편성된 예산 보다 과다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사무관리비’의 비과학적이고 전례답습적인 예산 편성 및 자의적인 집행에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20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의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

(단위 : 천원, %)

세부사업	통계 목	2020년도 산출액		2020년도			2021년도
		세부내역	편성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편성액
계			603,124	492,613	110,511	18.3%	428,605
특별사법 경찰 직무 역량 강화	사 무	계	37,805	17,948	19,857	52.5%	18,285
		강사료	7,695	5,940	1,755	22.8%	6,525
		원고료	360	288	72	20.0%	360
		책자인쇄(교재)	8,250	7,610	640	7.8%	7,500
		교육운영비	2,300	2,704	△404	△17.5%	3,900
		기본직무교육 교육생 중식비	2,600	1,406	1,194	45.9%	-
		직무 공동연수	15,000	-	15,000	100%	-
		공무국외 통역비	1,600	-	1,600	100%	-
특별사법 경찰 활동 활성화지원	관 리	계	445,093	390,376	54,717	12.3%	287,478
		기획단속 매식비	62,400	45,299	17,101	27.4%	19,680
		차량 임차료	175,800	165,528	10,272	5.8%	143,400
		피복비(제복제작비)	73,500	69,905	3,595	4.9%	36,190
		홍보비	40,000	37,892	2,108	5.3%	15,000
		수사활동 경비	28,800	25,973	2,827	9.8%	28,800
		수사업무 매뉴얼 제작 및 인쇄	5,000	4,880	120	2.4%	1,000
		압수물 폐기 비용	4,000	550	3,450	86.3%	3,000
		수사팀 운영	38,393	34,692	3,701	9.6%	35,808

특별사법 경찰 수사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	체력단련실 운영	7,200	5,657	1,543	21.4%	2,100
		정책자문단 운영	10,000	-	10,000	100.0%	2,500
		계	3,800	3,787	13	0.3%	1,600
		제안서평가위원수당	-	-	-	-	1,600
		수사전산장비 수리비	1,800	1,799	1	0.1%	-
		압수물 봉인봉투 제작	2,000	1,988	12	0.6%	-
기본경비	비	계	116,426	80,502	35,924	30.9%	121,242
		기본사무용종이류	1,229	1,720	△491	△40%	1,408
		소규모수선비	325	406	△81	△25%	340
		행정장비수리비	1,512	1,713	△201	△13%	1,764
		도서구입비	400	738	△338	△84.5%	450
		주요업무추진급량비	93,600	56,938	36,662	39.2%	97,920
		인쇄비 및 유인물 제작비	19,360	18,987	373	1.9%	19,360

○ 더욱이, 민생사법경찰단은 2020회계연도 결산 감사의견에서도, 구체적인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과도한 '사무관리비'가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사무관리비'의 미집행 예산을 연말에 집중 집행한 것은 예산낭비로 보일 수 있으므로 불요불급한 지출은 지양해야 한다는 시정권고가 있었음.

○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감사의견서

25. 사무관리비의 불용 및 연말 집중 집행 지양 등

(사무관리비 / 민생사법경찰단)

가. 현황 및 문제점

2020년 세출예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20.12.31.기준)

2020년 예산	2020 최종예산 (A)	2020 집행액		2020 불용액		불용률 20% 이상 사유
		집행액 (B)	집행률 (%)	불용액 (C=A-B)	불용률 (%)	
합 계	1,540,785	1,172,443	76.1%	368,342	23.9%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합계	46,805	26,927	57.5%	19,878	42.4%	
사무관리비	37,805	17,947	47.5%	19,858	52.5%	

○ 강사료	7,695	5,940	77.2%	1,755	22.8%	불용사유 : 코로나19로 집합교육 축소
○ 원고료	360	288	80.0%	72	20.0%	불용사유 : 코로나19로 집합교육 축소
○ 책자인쇄비(교재)	8,250	7,610	92.2%	640	7.7%	소진완료
○ 교육운영비	2,300	2,704	117.5%	△404	△17.5%	소진완료
○ 기본직무교육 교육생 증식비	2,600	1,406	54.1%	1,194	45.9%	코로나19로 집합교육 축소에 따른 증식비 집행 저조
○ 특사경 직무 공동연수	15,000	0	0.0%	15,000	100.0 %	전액 불용 : 코로나19로 20인 이하 소규모 교육 실시에 따라, 워크숍 실 시 불가능
○ 국외통역료 등	1,600	0	0.0%	1,600	100.0 %	전액불용 : 코로나19로 국 외연수 불가
국외업무여비	-	-	-	-	-	코로나19로 공무국외여행 불가함에 따라, 20년 국외 업무여비(15,000천원) 전액 감추경(제2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0	8,979	99.8%	21	0.2%	소진완료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합계	1,165,323	872,397	74.9%	292,926	25.1%	
기간제 근로자 (초단시간) 보수	7,250	7,056	97.3%	194	2.6%	소진완료
사무관리비	445,093	390,376	87.7%	54,717	12.2%	
○ 기획단속 등 매식비	62,400	45,299	72.6%	17,101	27.4%	불용사유 : 인원 감소, 코로나 재택근무 등에 따른 매식비 집행 감소
○ 차량 임차료	175,800	165,528	94.2%	10,272	5.8%	소진완료
○ 피복비(제복제작비)	73,500	69,905	95.1%	3,595	4.8%	소진완료 (단복 낙찰차액 140천원)
○ 홍보비	40,000	37,892	94.7%	2,108	5.2%	소진완료
○ 수사활동경비	28,800	25,973	90.2%	2,827	9.8%	소진완료
○ 수사매뉴얼 제작	5,000	4,880	97.6%	120	2.4%	소진완료
○ 압수물 폐기 운영	4,000	550	13.8%	3,450	86.2%	불용사유 : 수사감소에 따른 압수물 감소
○ 수사팀 운영	38,393	34,692	90.4%	3,701	9.6%	소진완료
○ 정책자문단 운영	10,000	0	0.0%	10,000	100.0%	전액불용 : 코로나19로 집합금지 준수에 따른 정책 자문단 미운영
○ 체력단련실 운영	7,200	5,657	78.6%	1,543	21.4%	불용사유 : 코로나19로 체력단련실 폐쇄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정책사업 수행 부서(실·과)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 사무비로서 특정 정책사업에 속하지 않으며, 부서 운영을 위하여 부서의 인원수 비례로 산출하는 운영경비 중의 하나로서 그중 일반운영비 중 하나인 코드 201-01을 말함(행정안전부 편찬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참조). 또한 각 사업내의 사무관리비라 할지라도 위 기준인 기본경비적 성격에서 벗어나 사업계획상의 인원의 수 비례에 벗어나거나 세부사업의 본질적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 됨.

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특사경 직무 공동연수, 국외통역료 등, 정책자문단 운영은 예산 전액이 불용되었음.

4차 추경(2020.08)까지 있었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서울시가 합리적으로 예산을 운용하지 아니하여 불용예산이 발생하였고, 감추경을 하였더라면 당해 불용예산을 긴급하고 더욱 중요한 곳에 집중하여 지출할 수 있었을 것임.

또한, 전체예산(1,541백만원)중 사무관리비(483백만원)가 차지하는 비중이 31%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보임.

2020년 사무관리비 주요 연간 집행액중 12월 집행액 비율 명세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12월 집행액	12월 집행액 비율	월평균 집행액 비율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지원	사무관리비	445	390	109	28%	8%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81	81	37	46%	8%

위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월평균 집행액이 8%이나 12월 집행액이 46%로서 집행액의 거의 반이 12월에 집중적으로 집행되었으며,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지원의 사무관리비는 연 8%이나 12월 집행액이 28%로서 이 또한 12월에 집중적으로 집행되었고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지원의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중 피복비는 12월 중 3번에 걸쳐 나누어 구매하였 으며, 유튜브 광고비, 사무용품 등을 연말 집중 사용하였음.

나. 시정권고

서울시는 세출예산 수립에 있어 전년대비 증감이나 추상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과다한 사무관리비가 편성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불용예산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면 추경에 반영하여 다른 긴급한 사안의 예산에 배정되도록 하여야 하고,

사무관리비의 미집행 예산을 연말에 집중 집행한 것은 예산낭비로 보일 수 있으므로 불요불급한 지출은 지양하도록 권고함.

※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의견서」, 164-167면 참조.

- 최근 3년간 민생사법경찰단의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19회계연도 불용률 16.7%에 이어, 2020회계연도에도 ‘사무관리비’의 불용률이 18.3%에 달하고 있는바, ‘사무관리비’의 과다 편성 및 불성실한 집행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할 것이며,
 - 다음연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에 있어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 후 실소요액을 기반으로 한 적정규모의 예산편성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민생사법경찰단의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

(단위 : 천원, %)

2018회계연도			2019회계연도			2020회계연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553,854	546,390	7,464 (1.3%)	617,291	522,685	104,606 (16.7%)	603,124	492,613	110,511 (18.3%)

나. 불용예산 발생의 문제

-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세출 예산은 예산현액 15억 4천만원 중 11억 7천 2백만원을 집행하여 불용률은 23.9%(3억6천8백만원)로 전년(16.3%) 대비 7.6% 증가하였으며,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1.6%)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바, 사업관리와 예산집행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2020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
총 예 산	1,540,785	1,172,442	-	368,343	23.9
사 업 예 산 계	1,400,399	1,074,980	-	325,419	23.2
민생사법경찰 활동 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1,400,399	1,074,980	-	325,419	23.2
민생사법경찰 업무 활성화	1,400,399	1,074,980	-	325,419	23.2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강화	46,805	26,926	-	19,879	42.5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1,165,323	872,397	-	292,926	25.1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188,271	175,657	-	12,614	6.7
일 반 예 산 계	140,386	97,462	-	42,924	30.6
기 본 경 비	140,386	97,462	-	42,924	30.6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국외업무여비’ 1천 5백만원을 감액한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강화” 사업은 예산현액 4천 6백만원 중 2천 7백만원을 집행하고 42.5%의 불용률(불용액 1천 9백만원)을 보이고 있음.

〈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강화” 사업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강화	46,805	26,926	19,879	42.5%
사 무 관 리 비	37,805	17,948	19,857	52.5%
국 외 업 무 여 비	-	-	-	-
시 책 추 진 업 무 추 진 비	9,000	8,979	21	0.2%

※ 불용사유

- ▶ 사무관리비 : 코로나19로 워크숍 실시 불가능에 따른 특사경 직무 공동연수비(15,000천원) 전액 불용 등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로 대면교육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음에 따라 직무교육 실적도 감소하였으나, 민생사법경찰단은 행정지식과 더불어 전문성은 물론 수사에 관한 특별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바, 대면 교육의 어려움은 있으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실질적인 수사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민생사법경찰단 직무교육 실적 >

2018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직무교육 1회, 102명 ○ 직무역량 공동연수 1회, 인원 89명 ○ 시구 합동 워크숍 1회, 인원 136명 ○ 월별 직무교육 : 7회, 인원 544명 ○ 수사팀별 직무교육 : 16회, 인원 197명
2019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직무교육 1회, 113명 ○ 과학수사 전문가 양성(5일) 16명 ○ 월별 직무교육 : 10회, 인원 734명 ○ 수사팀별 직무교육 : 5회, 79명 ○ 직무역량 공동연수 : 1회, 인원 89명 ○ 수사공조 위한 국외연수 : 3회
2020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직무교육 1회, 109명 ○ 전입직원 직무역량강화 교육 2회, 17명 ○ 월별 직무교육 : 4회 114명 ○ 수사팀별 직무교육 : 3회, 21명

- “기본경비”는 정책사업 수행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특정 정책사업에 속하지 않으며, 부서의 인원 수에 비례하여 산출하는 운영경비로서 예산현액(1억4천만원) 대비 불용률이 30.5%(불용액 4천2백만원)로, 민생사법경찰단 인원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와 외부 출장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하고 있음.

〈 “기본경비”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기본경비	140,386	97,462	42,924	30.5%
사무관리비	116,426	80,502	35,924	30.9%
국내여비	9,100	2,163	6,937	76.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500	5,499	1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360	9,298	62	0.6%

※ 불용사유

- ▶ 사무관리비 : 인원감소, 코로나 재택근무 등에 따른 특근매식비 집행잔액
- ▶ 국내여비 : 인원감소 및 코로나19로 외부 출장 감소에 따른 출장여비 집행잔액

- 이는 민생사법경찰단의 인력운영이 안정적이지 못함에 따른 것으로, 최근 5년간 민생사법경찰단의 인원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자치구 파견인력은 2019년 대비 4명이 감소하였고, 2017년 대비 전체인원은 20명이 감소함에 따라 부서의 인원 수에 비례하여 산출해 운영하는 ‘사무관리비’의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인바,
- 민생사법경찰단은 적정한 인력 운영계획 및 그에 맞는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불용 처리되는 예산에 대해 감액조정 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민생사법경찰단 현원 감소 이유, 향후 대책

- 감소 이유 : 자치구 파견 인력 감소 추세(’21.5월 현재 24명으로 ’18년 42명 대비 18명 감소)
- 향후 대책 : 市 정원 증원 및 수사에 적합한 자치구 파견 인력 선발 지속 추진
 - 서울시 인력 : 정원 6명 증원(18년 63명 ⇒ 21년 69명)에 따라 증가 추세
(※ 21년 현원 65명은 ① 21.4.19.자 단장 인사발령, ② 21.3.1.자 임기제 행정6급 의원면직(21.6월 총원 예정)에 따라 20년 67명 대비 2명 감소)
 - 자치구 인력 : 전체 현원의 30~40%를 차지하며, 파견기간은 2년 이상인 경우도 있으나, 본인 사정(승진 등)이 있을 경우, 조기 복귀
(※ 자치구 파견인력의 잦은 교체는 수사업무의 책임성, 연속성, 전문성 부족 문제 야기할 수 있어, 수사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책임자 선발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민생사법경찰단 인원현황 〉

(단위: 명)

구 분	계	시	자치구	차이
2017년	113	62	51	△6
2018년	104	62	42	△9
2019년	96	66	30	△8
2020년	93	67	26	△3
2021년 (5월 25일 기준)	89	65	24	△4

※ 민생사법경찰단 서울시 정원은 69명이나 ① '21.4.9.자 단장 인사발령, ② '21.3.1.자 임기제 행정 6급 의원면직에 따라 2020년 67명 대비 2명 감소.

○ 또한, 민생사법경찰단의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의 ‘공공운영비’, ‘배상금’ 등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민생사법경찰단의 20%이상 불용액 발생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천원)

연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사유
2 0 2 0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강화	사무관리비	37,805	17,947	19,857	52.5	코로나19로 워크숍 실시 불가능에 따른 특사경직무공동연수비(15,000천원) 전액 불용 등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공공운영비	77,980	54,149	23,830	30.6	코로나19로 외부 출장감소에 따른 차량 유류비 집행잔액(20,687천원)등
		국내여비	342,000	168,540	173,460	50.7	인원감소 및 코로나19로 외부 출장감소에 따른 현장 활동여비 집행잔액
		재료비	15,000	5,618	9,381	62.5	유통식품 및 의약품 수거 감소
		배상금 등	1,000	90	910	91.0	코로나19 영향으로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등 대면조사 자제에 따른 참고인 여비 집행잔액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16,426	80,502	35,923	30.9	인원 감소, 코로나 재택근무 등에 따른 특근매식비 집행잔액

		국내여비	9,100	2,163	6,936	76.2	인원감소 및 코로나19로 외부 출장 감소에 따른 출장여비 집행잔액(6,936천원)
2019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공공운영비	77,480	55,095	22,384	28.9	정부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차량 유류비 집행잔액
		재료비	15,000	10,522	4,477	29.9	의약, 식품 수사시 시료 검사 등을 위한 약품 등 재료 수거에 따른 비용 집행잔액
		배상금	2,160	915	1,244	57.6	참고인 조사에 따른 여비 집행잔액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13,498	82,181	31,316	27.6	특근매식비 집행잔액
2018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국외업무 여비	15,000	9,707	5,292	35.3	신규 지명분야 수사 및 각종 현안 업무 처리로 중국(홍콩, 광저우), 일본 등 2회 실시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배상금	2,160	707	1,452	67.2	2017년 대비 참고인 조사 관련 수사건수(11회→7회) 감소로 인하여 집행사유 미발생
	기본경비	국내여비	15,680	10,919	4,760	30.4	시직원 56명*20% 산정되었으나 현원 감소로 집행사유 미발생 하였으며 2019년 실소요에 맞게 50% 감액 편성

- 이렇게 과도한 불용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금액의 대소를 떠나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을 저해하는 바, 민생사법경찰단은 과거 결산실적을 감안한 예산 집행실태 분석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과 감액조정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한 예산 운용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최문숙
------	-----	-------	-----